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자료 제공

1. 개정(제정)이유

합성수지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목표를 달성한 일부 품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26667호,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삭제하고,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자 등의 자발적인 포장기준 준수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장 자율평가 시스템의 도입(안 제4조의2)

제조자 등이 환경친화적인 제품 포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그 시스템을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 등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공기충전식 포장제품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기준 명확화

연성재질 포장인 경우 35%이하 기준을 적용하되, 공기주입식 캔포장 음료 등 경성포장에 대해서는 20% 이하 기준을 적용하여 공기충전 포장을 하더라도 포장용기가 팽창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예외를 축소 적용

다. 합성수지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품목 삭제(안 [별표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26667호, 2016. 1. 1. 시행)을 반영하여 대상품목에서 삭제된 계란난좌 및 팩, 면류용기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삭제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①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환경



포장과 법률

친화적인 제품 포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포장 자율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포장 자율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조자 등은 해당 평가내용 및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 비고 3의2 중 “1차 포장에 공기를 주입한”을 “1차 연성포장에 공기를 주입한”으로 하고, “35% 이하”를 “35% 이하(경성포장 제품 중 공기주입포장을 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별표 3] 가목과 라목을 삭제한다. ☐

신·구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별표 1] 비고 3의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 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식품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포장 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35% 이하로 한다.</p> <p>[별표 3]</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제품의 종류</th> <th rowspan="2">대상 포장재</th> <th colspan="3">연차별 줄이기 기준</th> </tr> <tr> <th>2003년·2004년</th> <th>2005년·2006년</th> <th>2007년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닭사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td> <td>계란판</td> <td>60% 이상</td> <td>70% 이상</td> <td>80% 이상</td> </tr> <tr> <td></td> <td>팩</td> <td>35% 이상</td> <td>40% 이상</td> <td>45% 이상</td> </tr> </tbody> </table>	제품의 종류	대상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			2003년·2004년	2005년·2006년	2007년 이후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닭사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	계란판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팩	35% 이상	40% 이상	45% 이상	<p>제4조의2(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①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제품 포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포장 자율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p> <p>② 포장 자율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조자 등은 해당 평가내용 및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p> <p>[별표 1] ----- -----1차 연 성 포 장 에 공 기 를 주 입 한----- -----35% 이하(경성포장 제품 중 공기주입포장을 한 경우 20% 이하)-----</p> <p>[별표 3]</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제품의 종류</th> <th rowspan="2">대상 포장재</th> <th colspan="3">연차별 줄이기 기준</th> </tr> <tr> <th>2003년·2004년</th> <th>2005년·2006년</th> <th>2007년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가. <삭제></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제품의 종류	대상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			2003년·2004년	2005년·2006년	2007년 이후	가. <삭제>				
제품의 종류			대상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																												
	2003년·2004년	2005년·2006년		2007년 이후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닭사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	계란판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팩	35% 이상	40% 이상	45% 이상																												
제품의 종류	대상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																														
		2003년·2004년	2005년·2006년	2007년 이후																												
가. <삭제>																																

현 행					개 정 안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받침 접시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받침 접시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다.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받침 접시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다.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받침 접시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면류(麵類)	용기	20% 이상	30% 이상	35% 이상	라.〈삭제〉				

KOPA NEWS 신청

(사)한국포장협회에서는 매월 15일 온라인 뉴스레터 ‘KOPA NEWS’를 제작, 발송합니다. 신청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편집실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